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8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기동민·한준호·김회재

이상민 · 이정문 · 인재근

박용진 · 김원이 · 황운하

강훈식 · 조오섭 · 정춘숙

양정숙·김영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 보호를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뿐만 아니라 공 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를 연 1회에서 연 4 회로 강화함(안 제12조).
- 다. 공중화장실등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0조 신설).

법률 제 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청결을"을 "청결 및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로 한다.

제12조 중 "1회"를 "4회"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사생활 침해 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제3항 중 "제14조를"을 "제14조제1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생략)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u>청결을</u> 위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u>청결 및 공중화장</u>
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③ (생 략)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점검)
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u>1회</u> 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	
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 (생 략) < <u>신</u> 설>	지14조(금지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누구든지 사생활 침해 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u><신 설></u>	제20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

제21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u>제14조를</u> 위반하여 금지행 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생 략)

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설치한 사람은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4조제1항을-----
- _____
- ④ (현행과 같음)